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나53342 판결 [구상금 등 청구]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16. 11. 23.

판결 선고 2016. 12. 14.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5. 선고 2015가단533767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제1심 공동피고 A은 66,85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은 A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66,853,660원 및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8, 81(병합), 295(병합) 사기 사건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형사판결에도 언급되고 있는 제1심 공동피고 A은 별지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A의 위 대출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우리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원금 63,000,000원, 이자 3,853,660원의 합계 66,853,660원(63,000,000원 + 3,853,6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공모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66,853,66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 66,853,6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4. 5.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였을 뿐 제1심 공동피고들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은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주장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대연, 판사 김연경, 판사 이진영

(별지)

범 죄 사 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임차인 E 관련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인 F, G, H, 공인중개사인 C

와 허위 임차인인 E 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 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G는 2012. 6.경 대출신청자인 E으로 하여금 위 E이 I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E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 C은 위 시기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3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는냐'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J 제비동 301호'에 대해 마치 E과 피고인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을 작성한 후 이를 위 G을 통해 E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E은 2012. 6.경 피해자 신한은행 인천성모병원출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3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I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I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C,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임차인 A 관련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인 F, G, H, 공인중개사인 C, 허위 임차인인 A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

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G은 2012. 5.경 대출신청자인 A으로 하여금 위 A이 주식회사 월바스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A에게 건네주었고, 공인중개사 C은 위 시기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300만 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제비동 제3층 제309호'에 대해 마치 A과 피고인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G을 통해 A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A은 2012. 6.경 피해자 우리은행 도곡중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주식회사 월바스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주식회사 월바스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C, A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